



제 420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본계획에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포함〉

■ 전종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42호)

2025.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기본계획에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포함 ...	2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종덕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4. 11. 14.

3. 회 부 일 : 2024. 1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와 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는 양식생물의 새로운 질병 및 대량 폐사를 야기하는 등 양식산업 발전에 커다란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기본계획에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포함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① (생략)	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u>4.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 안에 관한 사항</u>
4. ~ 9. (생략)	5. ~ 10. (현행 제4호부터 제9호 까지와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 「양식산업발전법」 제6조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양식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같은 조 제2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양식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등 9개 호의 항목을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 항목 비교]

현행법상 기본계획 포함항목	개정안으로 추가되는 항목
1.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양식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양식인력 육성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5. 양식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6.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현행 포함항목과 같음

현행법상 기본계획 포함항목	개정안으로 추가되는 항목
7. 양식단지 조성 등 양식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양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u>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u>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수온, 적조 등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하여 해양환경변화에 민감한 양식 수산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양식업 생산량은 2000년 이후 지속 증가하여 어업생산량 감소를 보전하였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2019년 이후 감소 추세¹⁾이며, 수온상승으로 인하여 양식적지가 축소되고 있고 기존 양식장의 폐사율이 높아지는 등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또한, 24년의 경우 고수온 특보 발령일수가 71일로 2020년의 3배이고,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업 피해액도 특보도입(2017년) 이후 평균 피해액의 4배로 조사²⁾되고 있음.

□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기후변화가

1) '00년 65만톤, '10년 136만톤, '15년 167만톤, '19년 240만톤, '20년 231만톤, '23년 227만톤

2) 24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업 피해액은 약 1,159억원으로 특보도입 이후 평균 피해액의 4배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출처 : 해양수산부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

양식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및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5년 단위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하여 양식 적지 변화에 대한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2024년 9월 발표된 「제5차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2024~2028)」에 양식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단기 대응, 중단기 적응 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3) 개정안은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명시적으로 기본계획의 항목으로 포함하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개정안 부칙(안 제2조)은 적용례를 두어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적용(계획기간 2028년까지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나, 다음 계획의 수립주기가 2029년으로 상당한 기간 남아 있어 개정내용의 적용이 지연되는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4).

3) 기본계획 중 양식산업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은 [참고자료 1] 참조

4) 참고로 입법례를 살펴보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부칙<법률 제19017호, 2022.10.18.>과 같이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부칙에 법률 시행 이후에 일정 기간내에 개정사항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사례가 있음.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법률 제19017호, 2022.10.18.>

부칙 제2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관계 부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본계획에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22

비전

스마트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양식산업

정책목표

- ✓ 스마트·자동화 보급 : ⁽²³⁾ 7% → ⁽²⁸⁾ 50% → ⁽³³⁾ 100%
- ✓ 양식어가 평균소득 : ⁽²²⁾ 7,841만원 → ⁽²⁸⁾ 9,000만원 (14.8% ↑)
- ✓ 양식산업 생산금액 : ⁽²²⁾ 4조 784억 원 → ⁽²⁸⁾ 5조 달성 (23% ↑)
- ✓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마련

추진 전략	세부 과제
①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양식산업 체질개선	① 신규인력의 양식업 도전 기반 마련 ② 양식산업 민간투자 활성화 ③ 스마트·자동화 체계 전환 가속 ④ 양식장 통합 관리체계 정비
② 기초산업 내실화를 통한 단단한 도약기반 마련	① 양식분야 기초산업 경쟁력 제고 ② 국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 ③ 데이터 기반 수급관리 고도화 ④ 내수면·관상어 산업 내실화
③ 생산·가공·수출 연계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	①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 ② 소비활성화 및 유통체계 개선 ③ 수산식품산업 육성·수출 확대 ④ 새로운 부가가치 확장기반 마련
④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의 토대마련	① 건강한 어장환경 조성 ② 양식산업 기후변화 대응 전략 ③ 양식어가 경영 안정화 방안 ④ 인력양성 및 거버넌스 구축

4-2 양식산업 기후변화 대응 전략

- **(단기 대응)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대응역량 강화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재해피해 최소화 및 안정적 양식생산체계 마련
 - **(모니터링 강화)** 전국 주요해역 수온 등 어장환경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 추진
 - **(대응체계)** 산소공급장치, 히트펌프 등 대응장비 보급을 지속하고, 복구비용 산정단가 현실화, 재해 대응 시 조치사항 등 교육 실시
 - * **기후변화** 대응장비 : (~'23) 19,229대 보급 → ('24) 총 67억원 보급 등
 - **(재해복구)** 양식수산물 보험제도 개편 및 재해보험 가입을 제고를 위한 홍보를 확대하고, 피해 발생시에는 조속한 복구지원 추진
- **(중장기 적응)** 국내 주요해역의 중장기 기후·어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품종별 적지조사, 양식설비 고도화 등 적응력 강화 도모
 - **(적지조사 등)** 어장환경 변화에 따른 해조류, 패류 등 어장 적지 조사를 실시하고, **기후변화** 대응 품종개량 등도 차질없이 병행
 - **(양식설비 고도화)** 히트펌프, 인버터* 등 양식장 에너지 절감 설비 보급 및 이상수온, 태풍 등 재해에 대비한 내파성 가두리 등 양식기자재 개발
 - * (히트펌프) 어류성장을 위한 적정온도 조절, (인버터) 해수펌프 효율화로 소비전력 절감
- **(탄소중립 기반 마련)** 에너지 절감 설비 보급 및 자발적 탄소 저감 유도를 통한 양식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마련
 - **(자발적 탄소 저감)**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 개발을 통해 양식어가의 자발적 탄소 저감과 동시에 수익 창출 지원
 - *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이 아닌 사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
 - **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 모니터링을 위해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
 - **(저탄소 기반 구축)** 양식장 및 사료, 종자 생산시설 등 전후방산업의 탄소 배출 현황 조사를 통한 품종별 탄소 배출 인벤토리* 구축(~'26)
 - * 양식업 유형에 따른 직·간접적 탄소배출량 산출기준을 마련하여 인증제 등으로 연계